

기계설비공사업,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상 포함

대한설비건설협회
Korea Mech. Const. Contractors Association

회원정보
Member Information

알림광장
Bulletin Board

정보센터
Information Center

자료실
Data

협회소개
Society Introduction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 융합되는
환경 친화적인 건설문화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Korea Mech. Const. Contractors Association

최신뉴스 공개자료실 행사안내 more +

- ▶ 2015학년도 서울과기대 플랜트엔지니어링... [2015.01.30]
- ▶ 국토교통부 2015년도 건설산업 주요 경... [2015.01.28]
- ▶ (국)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채용공고 안내 [2015.01.26]
- ▶ 국유지 개발사업 기술자문위원, 후보자등록 안내 [2015.01.21]
- ▶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2015.01.21]

시공능력수평평가현황 more +

▶ 설비 (주)에이치엔피	387,252	[2015-01-30]
▶ 설비 (주)쑤	588,378	[2015-01-29]
▶ 설비 세운건설(주)	2,064,924	[2015-01-28]
▶ 설비 (주)링크엔	422,840	[2015-01-28]
▶ 설비 (주)지앤지인텍	524,741	[2015-01-27]

인터넷 증명 발급

증명서 발급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으세요

인터넷 실적신고

바른실적신고
공정한 시공능력 공시는 투명한 신진 건설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실적신고 바로가기

QUICK LINK

- ▶ 장애인 고용포털
- ▶ 증명발급
- ▶ 인터넷 실적신고
- ▶ 입찰정보
- ▶ 각종기준
- ▶ 설비건설 정보안내
- ▶ 뷰어다운

TOP

01_ 회원가입안내 02_ 등록비 안내 03_ 안전내규업체평가 04_ 시공능력평가

대한설비건설협회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 등 안내

GO

시도회 바로가기

유관기관 바로가기

중소기업청은 지난 해 12월 23일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과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업”을 포함하여 “2015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했다.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기계설비공사업이 포함된 것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회원사의 기술개발 촉진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기계설비공사업이 포함되도록 국토교통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원활한 정책자금 활용을 위해 각 시·도회 사무처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정책자금 상담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에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매뉴얼’을 링크하고 홈페이지 방문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및 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편집자 주]

1. 중소기업 정책자금 건설업 용자대상

2014년	2015년
산업플랜트 건설업,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조경 건설업, 방음 및 내화 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	산업플랜트 건설업,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조경 건설업,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방음 및 내화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2. 정책자금 지원 시 공통 적용 사항

- **용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다만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됨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기업은 우선 지원
 - *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소재 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산업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 **기업당 용자한도** : 45억원까지(비수도권은 50억원),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 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2015. 1/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2.86%)
- **용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용자신청·접수, 용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로 대출

□ 용자절차

- ①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www.sbc.or.kr) 자금신청
- ②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 산정(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중 용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③ 용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 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용자 결정
- ④ 자금대출 : 용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용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
- ⑤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용자제한기업

-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용자대상에 포함
-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용자목적외인 용도로 사용한 기업
-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⑤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용자대상에 포함
-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가 1,000억원 초과인 기업
 - 신성장기반자금 중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은 신용평가회사 BBB까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1,0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
- ⑦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 ⑧ 용자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⑨ 용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 ⑩ 용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5개부처 해당자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 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제외]

□ 접수시기

- (정기접수) 1회차는 2015. 1. 5(월)부터 접수, 2회차 이후(3월, 5월, 7월, 9월, 11월)부터는 매 격월별 첫 정상영업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 * 재창업자금 중 용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은 매 격월별(2월, 4월, 6월, 8월, 10월) 첫정상영업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 (수시접수)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
 -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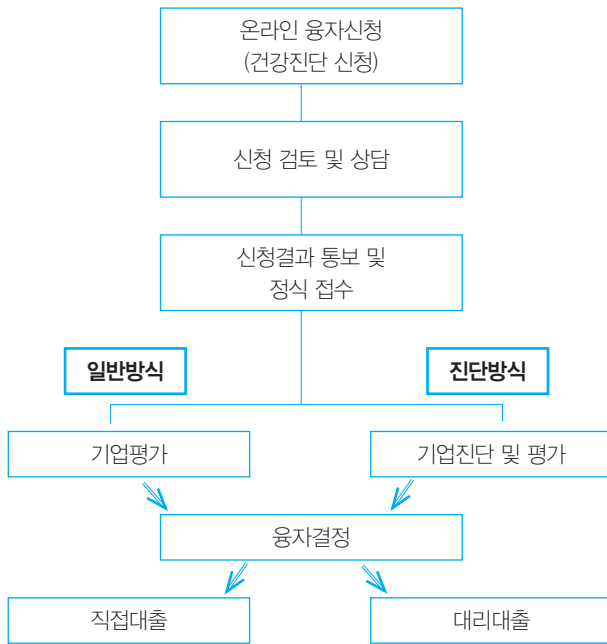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건강진단신청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활용계획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신청 (동시 업로드)

□ 처리절차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 건강진단신청서(건설업 제외), 정책자금활용계획서 동시 온라인 전송
* 단, 일부자금은 사업신청서 온라인 전송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 건강진단신청서(건설업 제외), 정책자금활용계획서 동시 온라인 전송
* 단, 일부자금은 사업신청서 온라인 전송
- 중진공
- 지원대상 여부 검토 및 상담
- 중진공 → 중소기업
- SMS 등으로 신청결과 통보
* 지원 대상 적합 시 정식 접수
- 중진공 → 중소기업
- 중진공 → 중소기업
- 지원 여부 및 지원결정 금액 통보
- 중진공 → 중소기업(직접대출)
○ 금융회사 → 중소기업(대리대출)

* 사업계획 승인 등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는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중 특허담보대출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 고성장(가질형)기업전용, 기초제조기업성장],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는 사전상담 필수

3. 사업별 정책자금 용자 계획

가. 창업기업 지원자금

- 지원대상 :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 자금으로 구분 지원

- 창업기업지원 :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청년전용창업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의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용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소요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단, 기업당 1회에 한정

○ 운전자금 : 창업소요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용자를 제한할 수 있음

□ **용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단,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7% 이내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없이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45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매출액 150%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나. **투융자복합 금융자금**

□ **지원대상** :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로 구분 지원

○ 이익공유형 대출

-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미만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며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포함)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문화콘텐츠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로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포함)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이익공유형 대출) 고정이자(대출시점에서 각 기준금리를 적용한 신용대출금리에서 2%p차감, 대출기간동안 고정)와 이익연동이자(영업이익의 3%)로 구성, 즉 고정금리로 대출 후 지원기업의 영업성과에 따라 추가로 이익연동이자를 후취(단,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이자와 이익 연동이자를 합한 이자총금액'은 대출원금의 40%를 한도로 함)

- (성장공유형 대출)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로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중진공이 인수

- 대출기간
 - 이익공유형 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 대출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 단,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 7년 이내(원리금 만기일시상환)
- 대출한도
 - (이익공유형 대출)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성장공유형 대출) 기업당 45억원(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프로젝트 당 10억원

다.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서,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용자 제외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 시설자금 지원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라. 신성장기반 자금

- 지원대상 : 신성장기반,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협동화자금, 고성장(가젤형) 기업전용자금, 기초제조기업 성장자금으로 구분 지원
 - (신성장기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 단, 업력 7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용자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

인을 얻은 자

- (기초제조기업 성장자금) 업력 4년 이상,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중소기업
-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 업력 4년이상 중소기업 중 최근 3년('11~'14년)간 상시 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15% 이상) 증가한 기업
 - *단, 최근 3년의 시작 및 최종연도의 근로자수가 10인이상인 기업만 신청가능
 - *청년(만 29세 미만) 고용기업은 고용증가율 1.5배 적용

□ **용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협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 지원자금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 사업장확보자금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

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용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시설자금의 30% 이내)
 - *혁신형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협동화(협업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제품 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및 시장 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용자 가능
 - *[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용자 불가]

□ **용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 * 시설자금(시운전자금 포함)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제외)
 - * 기초제조기업 성장자금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또는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45억원(지방소재 50억원)(운전자금 연간 5억원), 매출액 150% 이내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10억원
 - * 기초제조기업 성장자금 : 연간 10억원 이내(운전자금 2억원)
 - * 가젤형기업 전용자금 : 기업당 70억원(운전자금 10억원)

마. 재도약지원자금

- 지원 대상 : 사업전환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으로 구분 지원
 - (사업전환자금)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현 영위업종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전환 또는 업종 추가
 - 현재 영위업종이 전체 매출액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며, 사업전환의 대상일 것
 - (재창업자금) 저신용자(또는 신용불량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구조개선전용자금)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기업 구조개선 진단 추진기업
 -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경영개선 진단 기업
 - 금융기관의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또는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희생계획 인가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장설치 및 안정성 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단,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용자 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기준금리에서 1.05%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단, 재창업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45억원(지방소재 5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매출액 150% 이내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단, 업종전환의 경우 70억원
 - *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은 기업당 5억원 이내
 -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기업당 10억원 이내(기업회생인가기업의 회생채무 상환비용은 30억원 이내)

바. 긴급경영 안정자금

- **지원대상** : 긴급경영안정사업과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 : 재해 피해를 입거나 일시적 경영애로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용자범위**
 -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 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 계약에 따른 P/O)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소요 자금

□ **용자조건**

①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1.05%p 가산(기준금리)
 - * 재해중소기업은 연 2.5%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②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까지 이를 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 상환.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대출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